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 월

#### 올해와 내년 개인주택 유형별 종합부동산세율 적용 현황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	
	올해	내년	올해	내년
3억원 미만	0.5	0.6	0.6	1.2
3억~6억원 미만	0.7	0.8	0.9	1.6
6억~12억원 미만	1.0	1.2	1.3	2.2
12억~50억원 미만	1.4	1.6	1.8	3.6
50억~94억원 미만	2.0	2.2	2.5	5.0
94억원 이상	2.7	3.0	3.2	6.0

### 화

#### 10억원 취득, 15억원 양도, 5년 보유 주택 세금변화

취득 시기	비과세 요건	2년 거주	대상	2020년 1월 1일~12월 31일 양도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	
				세액	장특공제	세액	장특공제
8.2대책 이전취득	조정지역 ○ 조정지역 × (2년 보유)	○	9억원 초과분	2,895만원	40%	3,193만원	36%
				5,285만원	10%	4,117만원	24%
8.2대책 이후 취득	조정지역 × (2년 보유)	○	9억원 초과분	2,895만원	40%	3,193만원	36%
				1억6,900만원	10%	1억3,812만 원	24%
	조정지역 ○ (2년 보유 2년 거주)	×	차익 전액				



##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정책 현황

시기 (이전 인하 정책과 주기)	인하기간	세율 인하폭	인하 사유
2008. 12. 19.~2009.06.30	약 6개월	30%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
2012.09.11.~2012.12.31. (3년 2개월)	약 4개월	19~30%	유럽발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
2015.08.27.~2016.06.30. (2년 8개월)	약 10개월	30%	메르스 확산 이후 경기침체
2018.07.19.~2019.12.31 (2년1개월)	약 17개월	30%	글로벌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기침체
2020.03.01.~2020.12.31. (2개월)	상반기 3개월 하반기 6개월	70% 상반기 30% 하반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
2021.01.01.~2021.???.??	상반기 3개월~6개월 (검토중)	30~70% (검토중)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침체



## 12월에 꼭 알아야 할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

1. 50세 이상 근로자는 결정세액을 고려하여 연금저축 추가납입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2. 계부, 계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미리 챙겨라.
3. 총급여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산후조리원 비용 영수증을 미리 챙겨라.
4. 주택청약종합저축공제를 받으려면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5. 혼인신고를 12월 말까지 해야 배우자 공제가 공제된다.
6. 월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을 옮겨야 한다.
7. 암환자 장애인증명서는 미리 병원에서 발급받으면 좋다.
8. 올해 입사한 면세점 이하자는 연말정산을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9. 올해 신용카드한도 초과가 예상되면 고가의 물품구매는 내년에 지출하라.
10.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나오지 않은 서류는 미리 챙겨라.